

▣ 붙임

1. 검찰해명의 문제점과 검찰권 오남용 문제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한동대 교수)

1. 명예훼손죄는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가 아니다

이번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사 사건' 수사팀의 수사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적법성을 결여하고 있다.

검찰은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제7조제1항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비공개 예규가 어떻게 강제적 처분을 포함한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나? 형사절차 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 위법한 수사다.

더욱이, 지난 7/12 참여연대는 대검찰청 비공개 예규「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

비공개 예규는 검찰 수사의 근거가 아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번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도 근본적으로 근거가 없고, 위법하다.

2. 비례성을 상실한 수사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의자 내지 핵심 참고인들의 통화내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소위 '통신영장')를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피의자 내지 핵심 참고인은 4~5명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 1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를 위해, 언론인, 정치인 등 수천여 명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분별하게 조회하는 것이 과연 비례성을 갖춘 수사인가.

이러한 저인망식 수사, 먼지털이 수사가 과연 명예훼손죄 수사에서 비례성을 갖춘 수사라고 검찰은 자신할 수 있나?

3천여명 또는 그 이상이라 알려진 통신이용자정보가 모두 윤대통령 명예훼손죄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3. 단순 조회인가, 사찰인가

검찰은 “이번에 통신가입자 조회사실 통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검찰이 실시한 조치는,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고*,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는 가입자 인적사항과 가입·해지일시 정도”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ID 등은 보호되어야 할 메타데이터이고, 광범위하게 수집되어 분석될 경우, 사회관계망을 그려볼 수 있는 중요 정보이다. 휴대전화번호, 인적사항 등은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할 수 있는 키(Key)이자 중요 매개가 된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사법적 통제 없이 어떻게 관리되고 폐기되는지도 알 수 없는 검찰이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누적하고 있는 검찰이 주요 정치인들과 언론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한다면, 이는 정확히 사찰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를 받던 21년에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로 규정했다. 21년에 사찰이었던 통신자료 조회가 24년에는 적법하고 비례적인 수사가 되는 것인가

4. 통지 유예의 문제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2 2항에 따르면 2차례 통지를 유예할 수 있지만 그 사유는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짜

②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검찰은 “통지시점의 경우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단순한 수사 관련자의 지인이더라도 하더라도 이들에게 통신 수사 중인 사실과 수사목적이 알려지면 피의자 등에게 그 내용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의 사유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통지유예하였다가 법정 통지유예 시한에 맞추어 통지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전국을 떠들썩 하게 한 해당 수사의 내용과 목적을 검찰 스스로 노출하고서는 노출가능성과 그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통지를 최장으로 유예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 “수사 중인 사실과 수사목적”이 피의자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는 거의 공개수사에 가까울 정도 수사팀의 구성부터 피의자와 참고인이 공개되고 보도되었다. 수사목적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라 규정한 수사팀의 명칭처럼, 대선개입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의 적법성이 없는 위헌, 위법한 수사에 기초하고 있으며, 비례성을 상실한 무직위적이고 무분별한 수사이며, 단순조회를 넘어선 사찰이며, 유예 규정을 악용하였다.

검찰의 해명은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데 기술만을 보여줄 뿐, 수사의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통신이용자정보의 중요성과 수집 실태 / 오병일 진보네트워킹센터 대표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 통신이용자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다

1. 통신이용자정보의 중요성

- 서울중앙지검은 언론인, 정치인, 시민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사실이 드러나면서 통신사찰 논란이 발생하자 해명자료를 발표(8/6)하여,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고,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는 가입자 인적사항과 가입·해지일시 정도"였다고 발표하였음. 즉, 통신이용자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인데, 이는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시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빈약한지 보여주고 있음.
- 통신이용자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해지일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신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줌. 나아가 여러 사람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분석할 경우 사람들간의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소셜 그래프)를 추정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는 서로 다른 개인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하는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임.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에서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가 그 자체로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함은 물론,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도 개인정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는 강력한 연결자(Key Data)로서 기능하며, 이러한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인터넷 포탈사이트 아이디 등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의 행동과 신상에 관한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특히, 언론인이나 정치인의 경우 통신이용자정보를 통해서 취재원, 제보자, 내부고발자 등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통신이용자정보의 민감성 및 엄격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제 인권기구들도 권고해왔음.
- 2015년 11월 5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이라는 포괄적인 이유로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에 이용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음. - 2019년 한국을 방문했던 조셉 A.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방문 조사 결과 보고서(2021)>(A/HRC/46/37/Add.6)에서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 영장이 필요하지 않은 메타데이터 요청은 연간 640만 건에서 930만 건에 이르는 엄청난 수치로, 이러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때로는 무심코 요청되며,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열람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접근을 막고 현재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요청의 수를 줄임으로써 프라이버시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요청은 사법부의 감독을 받거나 새로운

SIPC(감시및수사권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통신자료('커뮤니케이션 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가 비록 통신 내용이 아니지만 민감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유럽인권재판소 빅브라더왓치 외 v. 영국 사건에서 영국 정부는 가입자 정보 등 커뮤니케이션 데이터가 통신 내용에 비하여 보호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인권재판소는 2018년 커뮤니케이션 데이터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고 그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음. 유럽인권재판소(2018)는 "356. 재판소는 관련 커뮤니케이션 데이터의 취득이 통신 내용의 취득보다 덜 침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자 통신의 내용은 암호화될 수 있으며, 해독되더라도 발신자 또는 수신자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커뮤니케이션 데이터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신원과 지리적 위치, 통신이 전송된 기기를 곧바로 드러낼 수 있다. 대량[빅데이터] 분석은 소셜 네트워크 매핑, 위치 추적, 인터넷 검색 추적, 통신 패턴 매핑 및 상호작용에 대한 파악으로 특정인의 내밀한 상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침해 정도가 더욱 크다."라고 설시하였음.
- 유럽사법재판소(2016) 역시 가입자 정보를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데이터가 통신 내용 만큼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함. "특히 해당 데이터[가입자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커뮤니케이션 데이터]는 관련된 개인에 대한 프로필을 형성하는 수단을 제공하여 실제 통신 내용 만큼 민감한 정보를 제공한다."
-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에서 "국제인권기준과 판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통신자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쉽게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라고 판단"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 ▲사전·사후에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 되었는지 알 수 있는 통지 절차가 없다는 점 등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이용자정보는 정보수사기관이 매우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현재 통신이용자정보는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 국정원, 공수처, 법원, 국세청 등 광범위한 기관이 요청할 수 있으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

이외의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제공 절차 또한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만 하면 될 뿐이며, 그조차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두 등의 서면 외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음.

2.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현황

전화번호 /아이디 건수별	검찰	경찰	국정원	공수처	기타기관	합계
2000	99,925	213,975	31,676		121,336	466,912
2001	122,651	380,480	64,348		140,478	707,957
2002	158,949	481,474	48,522		110,007	798,952
2003	271,488	697,621	79,988		107,944	1,157,041
2004	348,620	1,378,130	84,273		97,464	1,908,487
2005	881,954	2,103,661	58,976		145,320	3,189,911
2006	947,369	2,069,948	43,184		151,808	3,212,309
2007	873,423	3,257,258	49,995		143,730	4,324,406
2008	1,061,553	3,770,259	55,090		268,949	5,155,851
2009	984,611	5,351,080	72,089		471,964	6,879,744
2010	1,323,176	5,419,365	76,018		326,233	7,144,792
2011	1,295,968	3,958,055	102,979		491,989	5,848,991
2012	2,241,812	5,115,131	110,923		411,722	7,879,588
2013	2,858,991	6,230,617	113,305		371,746	9,574,659
2014	4,267,625	8,371,613	114,764		213,454	12,967,456
2015	2,736,238	7,520,195	122,719		197,927	10,577,079
2016	2,208,469	5,833,312	47,433		183,290	8,272,504
2017	1,934,319	4,176,093	23,867		170,706	6,304,985
2018	2,110,476	3,826,000	29,522		175,109	6,141,107
2019	1,975,869	3,866,137	43,325		142,937	6,028,268
2020	1,841,049	3,465,790	39,582		138,496	5,484,917

2021	1,355,739	3,511,706	31,131	6,465	138,738	5,043,779
2022	1,305,620	2,896,151	12,537	117	125,061	4,339,486
2023	1,479,392	3,001,115	21,316	2,462	127,025	4,631,310

통신수단별 (문서 기준)	유선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PC통신·인터넷	합계
2000	18,464	57,077	885	1,647	78,073
2001	22,665	85,390	158	5,209	113,422
2002	24,533	87,858	111	15,285	127,787
2003	39,460	119,360	70	30,302	189,192
2004	46,366	191,649	20	41,894	279,929
2005	56,614	244,976	23	41,158	342,771
2006	48,462	204,071	9	71,024	323,566
2007	57,375	275,338	4	93,691	426,408
2008	58,374	296,913	1	119,280	474,568
2009	59,913	358,375	0	143,179	561,467
2010	61,418	397,294	0	132,337	591,049
2011	68,643	444,294	0	138,248	651,185
2012	88,426	598,462	0	133,912	820,800
2013	110,575	719,158	0	115,194	944,927
2014	122,004	764,749	0	114,260	1,001,013
2015	131,380	892,951	0	100,643	1,124,974
2016	123,252	902,060	0	84,302	1,109,614
2017	105,272	819,328	0	65,151	989,751
2018	89,565	829,323	0	55,593	974,481
2019	80,713	861,979	0	60,707	1,003,399
2020	62,085	874,083	0	56,614	992,782
2021	47,503	889,244	0	52,728	989,475
2022	37,274	901,022	0	57,278	995,574

2023	35,856	1,004,179	0	79,567	1,119,602
------	--------	-----------	---	--------	-----------

-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유사한 수준.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 인구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500만건 내외의 통신이용자정보가 매년 제공되고 있음.
- 문서 건수별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다소 증가하였고, 전화번호/아이디 건수 기준으로는 다소 감소함.
- 통신수단별로는 이동전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일반 전화에 비해 통신이용자 개인에 대한 특정이 더욱 용이해지고 있다는 의미임.
- 또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이동통신 업체들이 인터넷 업체보다 통신이용자 정보를 훨씬 쉽게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임.

3. 현행 통지 제도의 문제점

- 2022.7.21.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음. (헌법재판소 2022. 7. 21.선고 2016헌마388 등 결정)
- 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도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영장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 검찰은 당사자들에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이를 통해 과거에는 (스스로 통신사에 열람청구를 하기 전에는)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되었다는 것은 현재의 위헌결정에 따른 진전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번 통지 과정에서 현행 통지 절차의 문제점도 함께 드러남
- 통지는 "사용 목적"에 대하여 단지 "수사"라는 내용만 기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사용목적'에 '수사'라고 기재한 것은 매우 당연하며 중언부언적인 정보임.
- 특별히 제공 사유의 문제를 다룬바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지제도에 대하여 현재는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등) "수사의 밀행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적법절차원칙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에게 적절한 고지와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통지조항은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거나 기소중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경우에 제공사실을 통지받더라도 그 제공사유가 통지되지 아니하며, 수사목적 달성을 이후 해당 자료가 파기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정보주체로서는 위치정보 추적자료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가 장기간 계속되거나 기소중지된 경우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독립적 기관의 허가를 얻어 통지를 유예하는 방법,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정보주체가 그 제공요청 사유의 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통지의무를 위반한 수사기관을 제재하는 방법 등의 개선방안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통지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며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바 있음. 통신비밀보호법은 국회에서 개정되어 현재 "...당사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5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사용목적"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5항의 "제공을 요청한 사유"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며, 구체적인 "제공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최소한 동법 제83조제4항의 "정보제공요청서"에서 요청당시 기재하였을 '요청사유'에 준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할 것임.
- 또한 검찰은 1개월의 통지 기간이 지난 후 2번에 걸쳐 6개월 동안 통지를 유예하였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 제2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문제는 아무런 통제없이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최장 기간 동안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는 것임.
- 진정으로 통지를 유예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 등 제3자 기관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음.

3. 통신이용자정보 무단수집 근절방안 / 김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2019년 조사를 통해 디지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메타데이터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발언자가 지적해주셨듯이 메타데이터에 대한 보호는 우리의 권리이자 수사기관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헌법재판소의 2022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도입된 정보통신사업법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사후통지제도(이하 “사후통지제도”라 합니다) 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남용적 수집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사후통지제도는 근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사법적 통제 없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하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필요한 제도개선은 애초에 수사기관 등의 자의적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도 도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사기관 등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법률로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수사목적으로, 어떤 사건에서든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비례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 등의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해서는 사법적 사전통제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장 또는 허가와 같은 법원의 사전적 통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통신이용자, 즉 시민의 권리이자 이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입니다.

둘째, 수사기관 등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수사기관 등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등을 점검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연 2회에 불과한 임의규정이어서 수사기관 등의 과도한 통신이용정보 수집을 야기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현행법과 같은 형식적·임의적 절차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의 전반적 적정성을 평가하고, 투명하게 이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셋째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봤을 때, 정보주체는 위법·부당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주체, 즉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는 자신에 대한 통신제공 수집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그 적정성에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보주체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사실과 △그 구체적인 사유를 △일정 기간 안에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절차규정을 두어, 사후라도 수사기관 등의 자의적이거나 남용적인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사후통지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 등이 정보주체에게 30일 이내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게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이 스스로 일정 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 등의 사후통지 유예가 적법한 사유에 의한, 적정한 것인지 평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후통지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통지유예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명시한 최소 유예기간 7개월을 더 단축하고 통지유예가 장기간 계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지유예가 법률상 요건에 따른 적법하고 필요한 통지유예인지를 평가·감시할 수 있는 심사제도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기관 등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하여 ▲법원에 의한 사전적 통제장치 마련, ▲통신이용자정보제공에 대한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감시·감독,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의 적정성 평가제도 마련, ▲정보주체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구제책 마련 및 수사기관 등의 책임성 확보, ▲현행 사후통지유예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률적, 제도적 통제가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